

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이 동 현 위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
-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라 자전거 이용이 증가되면서 자전거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나 자전거 이용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‘자전거 보험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자체 간 선택적 가입 및 보상 차이 존재로 형평성의 문제 발생하고 있습니다.

-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자치구에 속하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 보험 가입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의 대상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이

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대상자 및 재정부담의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
-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